

2024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안내

■ 지원요건

1.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

- :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이하 '육아휴직 등')을 부여
하고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
-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/나
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(6개월 미만 근무 시 부지급)

2.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

- :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
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
-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이 끝난 후 휴직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
 -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해당 대체인력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
이직시키지 아니할 것
 -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후 30일이
지난 날부터 신청
 -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
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/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
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

※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%한도로 지원가능

■ 제출서류

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(팩스 접수 불가), 고용24(<https://www.work24.go.kr/>) 온라인 접수
(주소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(구미동 23-3)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기업지원팀 (우)13627)

-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

- ① 「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」지급신청서【별지 제25호 서식】
- ② 휴직계(육아휴직계/육아기근로시간단축/복직계)
- ③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신헌인서,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- ④ 근로자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- ⑤ 재직증명서 -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
- ⑥ 회사 통장(앞면) 사본(최초 신청시 또는 지원금 계좌 변경시에 한함)

-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

- ① 「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」지급신청서【별지 제26호 서식】
 - ② 출산전후휴가, 유·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
 - ③ 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.
 - ④ 대체인력자의 임금대장과 급여이체내역
 - ⑤ 휴직계(출산전후휴가계/유산사산휴가계/육아기단축계/복직계)
 - ⑥ 재직증명서 -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
- 근로자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
■ 지원금 신청기한

1. **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:** 지원금 신청은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종료일부
 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 다만,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끝
 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.
2. **대체인력 지원금:** 지원금 신청은 출산전후휴가, 유산사산휴가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종료일부
 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 다만,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, 유산사산휴가, 육아기
 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.

지급기준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육아휴직 지원금):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,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1년을 한도로 지급하고,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자녀 연령		연간총액	1개월 지급액
육아휴직	만 12개월 이내*	870만원	▲ 첫 3개월 200만원 ▲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
	만 12개월 초과	360만원	30만원

*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):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, 1년(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)을 한도로 지급하고,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구분		연간총액	1개월 지급액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	기본	360만원	30만원
	인센티브 적용 ^{비고}	480만원	40만원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대체인력 지원금):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,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채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구분	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	1개월 지급액
우선지원대상기업	120만원	80만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,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

인건비 지원 금액은 지급대상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

■ 지원제외 사업주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
■ 지원제외 근로자

-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
- 사업주(법인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외국인(거주(F-2) . 영주(F-5) . 결혼이민자(F-6)는 제외)
- 고용보험 미가입자

◎ 신청서 : 성남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(<http://www.work.go.kr/seongnam>)(정보마당- 서식자료실)

< 유의사항 >

- **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·지급받은 자는 반환, 추가징수(2~5배), 지급제한기간 설정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1. 이 지침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.
 2.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,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참여 신청(사업계획서) 및 지원금 지급 신청, 그 외 다른 지원금 신청 등은 하나의 사업 단위(법인)로 판단하며, 신청은 본사(본점)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한다.
 3. 사업장의 독립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